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451000·21진정0477800 병합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진 정 인 ○○○○○○ ○○○○○○

- 피진정인 1. ○○외국인보호소 소장
2. ○○○ 외 11명(○○외국인보호소 보호3팀)
3. ○○○ 외 7명(○○외국인보호소 보호1팀)
4. ○○○ 외 12명(○○외국인보호소 보호2팀)

주 문

1.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가.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나. 보호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 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특별계호 사유의 설명,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관행을 개선할 것

다. 이 사건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관리책임이 있는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

2.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 시 보호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에 보호 중인 난민신청 외국인이다. 피진정인들은 2021. 5.경, 2021. 6. 8., 6. 10. 진정인에게 손목수갑, 발목수갑, 포승을 이용하여 사지를 등 뒤로 묶어 결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해 징벌의 목적으로 반복적인 독방수용(특별계호)을 실시하였다. 또한 특별계호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한 통지가 미비했으며, 법적인 근거 없이 물, 매트리스, 이불 등을 압수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국가 시설물 파손, 피진정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 흉기위협, 모욕(욕설, 침뱉기)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2021. 5.~같은 해 6. 수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에게 손목수갑을 뒤로 채우고, 발목에 포승을 묶어 손의 움직임과 발의 움직임을 동시에 제한한 것은 총 3차례인데, 이는 당시 현장에서 피진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포승을 사용하기 전 진

정인에게 자해나 난동 등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포승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렸고, 보호장비 사용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진정인을 관찰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에 있어 개시 및 연장 전에 사유를 고지한 후 특별계호 통고서를 발부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신체적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해당 외국인과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그 각각의 사유는 너무나도 자명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특별계호 시에도 특별계호실 내 화장실 하수구를 막은 다음 모포를 변기안에 넣고 화장실 물을 침실까지 흘러넘치게 하는 등 피진정기관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파손시켰다. 이에 시설물 파손 및 침구류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도를 차단하거나 침구류를 수거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이 진정되면 차단된 수도를 해제하고 침구류를 재지급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의견진술,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특별계호신청서 등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진정인(1991년생, 남성)은 xxx 국적의 외국인이다. 진정인은 2017. 10. 국내 입국하여 난민 신청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있던 중, 2021. 3. 불상의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같은 달 17. 이후 피진정기관에서 보호하는 외

국민이다. 피진정인 2~4는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을 당시 근무하며 직접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2021. 3.~6.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 관련 사항

1) 피진정인 1은 2021. 3.~6.경 진정인에 대하여 난동, 지시불응, 기물파손 등의 이유로 특별계호 및 특별계호 연장 조치(총 12차례, 약 34일)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각각의 특별계호 시, 특별계호신청서 및 지시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을 정하여(약 3일~5일) 특별계호를 실시하였다.

2) 피진정인들은 각각의 특별계호 시, 진정인에게 ‘특별계호 통고서’(한글, 영문 병기)를 배부하여, 특별계호의 법적 근거, 사유, 장소, 기간 등을 고지하였다. 특별계호 통고서는, 특별계호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특별계호의 법적 근거, 특별계호 장소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9가지 유형(도주, 난동, 기물파손, 상호다툼, 타인, 위해물질반입기도, 자해, 지시불응, 기타)의 특별계호 사유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2021. 5.~6.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사항

1) 보호장비 사용내역

①5. 10.(18:44~20:35), ②5. 11.(02:50~03:45), ③5. 11.(14:40~18:02), ④5. 17(13:25~14:20), ⑤6. 7.(18:20~20:00), ⑥6. 8.(00:11~04:10), ⑦6. 10.(10:27~13:35), ⑦6. 10.(14:41~17:05) 자해 방지 및 위협적인 행동 방지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2) 보호장비 사용방법

①2021. 5. 10. 18:44경에는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 포승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고, 포승은 두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②2021. 5. 11. 02:50~03:45, ③같은 날 14:40~18:02, ④5. 17(13:25~14:20), ⑤6. 7. 18:20~20:00에는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또한, ⑥6. 8.(00:11~04:10), ⑦6. 10.(10:27~13:35), ⑦6. 10.(14:41~17:05)에는 진정인에게 뒷수갑과 포승, 머리보호장비(6. 8.은 제외)을 사용하였는데, 두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한 뒤,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각각 약 15분, 3시간, 2시간 25분)하기도 하였다.

3) 보호장비 사용 중 특이사항

진정인은 보호실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바닥과 마찰시키는 반복으로 머리보호장비, 포승, 뒷수갑을 스스로 해제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호실 내에 벽 장판을 뜯거나, 창문틀을 파손하여 만든 플라스틱 조각을 목에 대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고, 화장실 변기의 물을 넘치게 한 바도 있다. 이때마다 피진정인들은 보호실에 재입실하여 보호장비를 재사용하고, 보호실 내에 있던 모포, 매트리스 등을 밖으로 옮긴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 일종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은 보호장비의 사용은 법으로 정해 두고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이나 피구금자가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는 등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굴욕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수갑 또는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제47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위협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계호의 방법과 보호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과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자유는 이러한 권리에 해당한다”(2008헌마430, 2012. 8. 23. 전원재판부)고 결정한 바 있고,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구를 사용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4헌마49 결정).

나. 진정요지 가항(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피진정인들은 2021. 5.~같은 해 6., 진정인의 자해 및 위협적인 행동을 방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에 대하여 8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대해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임을 주장하는바,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등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보호장비 사용 사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CCTV 영상 중 확인 가능한 대략적인 모습들만으로도, 진정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진정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혐의로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심적 흥분 상태가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하다.

또한, 진정인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중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진정인들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진정인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이내로 보여지고, 진정인이 특별하게 문제 삼는 2021. 6. 10. 10:28경 직원 ○○○의 경우, 진정인의 폭행 및 모욕에 대한 다소간 감정적인 대응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직원들의 제지로 행동이 중단된 점을 고려할 때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이를 만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아울러, 진정인이 반복적으로 보호장비를 스스로 해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 4가 2021. 6. 10. 12:51경 머리보호대를 고정하며 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사용한 방법이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2021. 5. 10. 18:44경 진정인의 두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하였고, 2021. 6. 7. 00:11경, 2021. 6. 10. 10:27경 및 같은 날 14:41경에는 두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한 뒤,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각각 약 15분, 3시간, 2시간 25분)하였다.

피진정인들의 행동기준이 되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이 보호장비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수갑에 대해서만 그 방법을 열거하고 있을 뿐, 포승에 대해서는 유의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나, 이는 규정개정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일 뿐, 피진정인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을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한 뒤, 포승과

뒷수갑을 다시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대상자 보호 또는 시설물 손괴 방지라는 사용 목적을 넘어서서 대상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다른 진정사건 결정을 통해 두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한 뒤, 포승과 뒷수갑을 다시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수차례 한 바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유사 사례에 대하여 피진정인 1에게 권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한 뒤, 포승과 뒷수갑을 다시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진정인이 겪어야 할 신체적, 인격적 고통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특별계호 등)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은 각 호의 경우(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외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보호외국인

에 대해 격리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한 규정인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격리 보호) 제1항은 소장에게 일정한 경우 보호 외국인을 독방에 격리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특별계호) 제7항은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그 목적이 임시 보호시설이므로 교정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수용자를 징벌 조치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나, 외국인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보호를 위해 ▲자·타해, 도주 등의 방지,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특별계호는 사실상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인은 2021. 3. 4.~같은 해 6. 22.(약 110일) 중 12차례, 34일 동안(연속 집행 최고 10일, 특별계호 통고서 상 2021. 6. 9~6. 13.의 기간은 오기로 확인됨) 특별계호 대상이 되어 특별계호 실 등에 보호되었는데, 진정인의 각각의 위협행동 등은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의 문언은 해석상 연속적인 특별계호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므로 특별계호 기간 중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적으로 특별계호를 반복 실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 기간도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3조가 금지하는 장기 독방격리수용의 기간(연속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특별계호 중의 처우(물, 매트리스, 이불 등을 압수와 관련한 주장) 역시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진정인들의 물품 이동은 진정인의 기물 훼손(화장실 물을 계속적으로 넘치게 하는 등의 방법)에 대응 또는 보호장비 사용을 위한 조치로 한정되며, 이 경우 별도의 근거규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진정인의 행동 전후로 확인되는 진정인에 대한 처우(도서, 집필기구 비치 등), 피진정인들의 물품 재배치 모습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장비 사용 기간 이외에 상시적으로 피진정인들이 부당하게 진정인의 이불, 매트리스, 물 등을 압수하여 고통을 주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문제는,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의 성격으로 특별계호가 실시된 경우 그 사람을 자·타해, 도주 등의 위험 및 우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의 특별계호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그 방법, 절차,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동등하게 처리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1항 단서조항인 필요최소한도의 강제력 행사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실무적으로도 피진정기관의 특별계호실은 자해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일반 생활실과는 구조적인 차이(화장실의 노출 정도, 공중전화 및 TV 미설치)가 명확하므로 불이익한 처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특별계호가 제재조치로서 불이익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상의 근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제기 절차 등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특별계호를 실시하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특별계호 신청서와 지시서의

결재만을 통해 특별계호를 실시하였는데,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는 ▲자·타해, 도주 등의 위협 및 우려로부터 보호,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혼합되어 있는바, 적어도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관련 절차 이행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특별계호) 제4항은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하여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계호가 당사자 보호나 시급한 질서유지 확보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과거 행동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보호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수준에 준하는 이유제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 특별계호 사유 설명이 문서(특별계호 통고서)로 통보되기는 하였으나, 문서상 기재된 이유제시의 정도가 실제 특별계호 사유(특별계호 신청서 및 지시서 상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간략하고 일부 특별계호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 기재 없이 '기타'(2021. 5. 11.~같은 달 12. 특별계호)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보호장소가 누락되어 있는 점(2021. 6. 3.~같은 달 8. 특별계호) 등을 종합할 때 불이익한 조치에 대한 예고 및 설명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 1은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를 실시하였고, 그 사유 설명도 미흡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 사건 인권침해 사례의 중대성과, 유사 사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중에 동일 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에 관련 조치를 주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부당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 사건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관리책임이 있는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 특별계호 시 보호외국인의 방어권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8.

위원장 박찬운

위원 석원정

위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2015. 12. 17. 유엔총회 채택)

제43조 ① 제한 또는 규율에 따른 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과 다름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취급은 금지되어야 한다.

- (a) 무기한 독방격리수용
- (b) 장기 독방격리수용
- (c) 피구금자를 암실 또는 늘 불이 켜진 공간에 구금하는 행위
- (d) 체벌 또는 피구금자의 식사·식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 (e) 집단 처벌

②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로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 또는 제한적 조치로 가족과의 연락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가족과의 연락은 제한적 시간에 한하여, 그리고 보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44조 본 규칙에서 “독방격리수용”이라 함은 1일 중 최소 22시간을 실제 타인과의 접촉 없이 격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 독방격리수용”이라 함은 연속 15일을 초과하여 독방 격리수용함을 의미한다.

제45조 ① 독방격리수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해야 하고, 독립적인 심사를 조건으로 하며 담당기관의 승인 이후에 처분할 수 있다. 피구금자에 대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하여 독방격리수용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독방격리수용 처분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면 독방격리수용 부과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47조 ① 굴욕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수갑 또는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기타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 두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알리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①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장비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a) 보호장비는 보호장비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b)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장비가 없을 때의 행동에 위험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② 진통 중, 분만 중 및 분만 직후의 여성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

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격리 보호) ①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 난동, 폭행, 시설·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하였을 때
4. 자살·자해를 피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
5.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될 때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건 경위와 격리 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법 제56조의4 제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는 청장 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捕繩)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머리 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

③ 보호장비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

임을 살피고, 머리보호장비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그 요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즉시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6.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특별계호) ① 상황실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격리보호와 함께 특별계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식 제44호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계호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제1항의 특별계호 신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특별계호를 지시할 수 있다.

④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하여 줄 수 있다.

⑦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특별계호중에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특별계호 기간 중 면회, 운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운동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3조(보호장비 사용)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장비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6조(포승사용시 유의사항) 보호근무자는 포승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포승은 수갑 사용으로는 도주,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이 때에도 보호외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포승 사용 중 타인에게 가해행위 등 도발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승을 사용할 때에는 혈맥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수갑사용시 유의사항) ① 보호근무자가 수갑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수갑이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 크기보다 5mm정도 크게 채워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항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3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2. 위력으로 보호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3. 보호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③ 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제1항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근무자는 2명 이상의 보호외국인을 계호하는 경우 계호인원, 주변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다른 보호외국인과 연결하여 수갑을 채울 수 있다.

⑤ 보호근무자는 안전핀이나 그 밖에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은

안전장치를 채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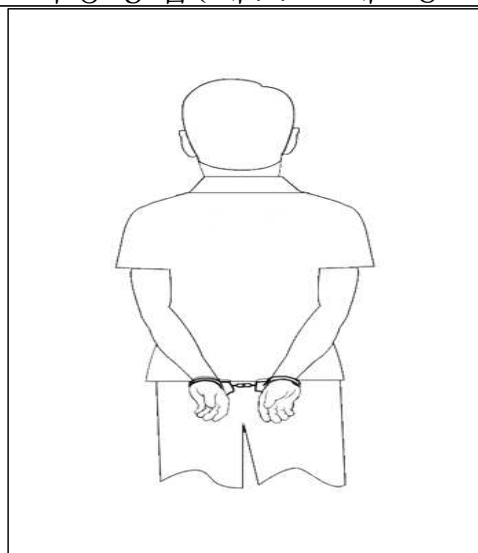
제78조(머리보호장비 사용)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호흡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대면 계호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수갑 사용방법(제77조제2항 관련)



뒤로 사용